

서울예술영재 음악교육(서부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2100
------	------

2024. 9.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4년 8월 14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9.9.)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문화본부장 이회승)

1. 제안이유

가. 서울예술영재 음악교육(서부권) 사무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5조의2에 의거, 예술에 재능이 있으나 경제적 여건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발굴·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예술적 잠재력 발현과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을 위하여 경험 및 전문성과 인적·물적 인프라 등이 풍부한 민간에 교육을 위탁·운영 중임.

다. 공모를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서울예술영재 음악교육(서부권)
- 사업내용 : 음악에 재능이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발굴, 대학 등의 인적·물적 인프라와 전문성을 활용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
- 교육대상 : 생활이 어려운 초·중등생 총 70명
- 교육기간 : 약 9개월간

나. 주요 위탁 내용

- 위탁기간 : 3년(2025. 1. ~ 2027. 12.)
- 위탁유형 : 사무형 위탁
- 소요예산(안) : 410백만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위탁(공개모집)
- 위탁사무 범위
 - 교육생 모집 및 선발, 교육 과정 운영
 - 교육커리큘럼 기획 및 교수진 구성
 - 교육장소 및 협력시설, 교육 기자재 및 물품 확보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옥심)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예술영재 음악교육(서부권) 사업의 민간위탁 만료일(2024.12.31.)이 도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¹⁾ 규정에 따른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나. 서울예술영재 음악교육(서부권) 사업 운영 현황

- 현재 서울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 중 음악·미술에 재능있는 자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예술적 잠재력을 발현하고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하고자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동 사업의 대상은 중위소득 120% 미만에 해당하는 총 270명(초1~고1)의 학생을 대상으로 음악교육(162명)과 미술교육(108명)을 각각 3개의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비는 총 12억원임.

1)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 >

구분	음악		미술
사업명	서울예술영재 음악 교육(서부권)	서울예술영재 음악 교육(동부권)	서울예술영재 미술 교육
수탁기관	숙명여대산학협력단	건국대산학협력단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
예산	330백만원	530백만원	340백만원
대상	초1~초6 총59명 중위소득 120% 미만	초3~고1 총 103명 중위소득 120% 미만	초3~고1 총108명 중위소득 120% 미만
위탁기간	2022.1.1.~2024.12.31.	2023.1.1.~2025.12.31.	2023.1.1.~2025.12.31.
최초 운영시기	2020년	2008년	2011년

- 한편, 사업명은 ‘저소득층’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교육생, 수료생, 학부모의 반감과 수료 후 대외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여 2025년부터 사업명을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에서 ‘서울 예술영재 교육 지원’으로 변경할 예정임.
- 재위탁 동의를 받는 ‘서울예술영재 음악 교육(서부권)’은 지역적 편차를 해소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2020년 신규로 추진되고 있으며, ‘숙명여대산학협력단’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 ‘서울예술영재 음악 교육(서부권)’은 2020년 신규로 추진된 이래 지난해까지 총 205명이 지원받았으며, 이 중 1명이 예술 관련 학교로 진학하고, 23명이 음악 관련 대회에서 수상한 것으로 확인됨.

< 저소득층 음악영재 교육지원(숙명여대산학협력단) 실적 >

(단위 : 명)

연도별	교육인원	진학 소계	예 중	수상 실적
계	200	1	1	23명(17회)
2020	50	1	1	1명/1회
2021	50	0	0	5명/6회
2022	50	0	0	10명/10회
2023	50	-	-	7명/9회

- 동 사업은 ‘권역별 균형 있는 음악영재 발굴·육성’이라는 사업 취지와 달리 초등학생 중심의 영재 발굴에 한정되는 한계로 인해 2025년부터는 중학생까지 연령을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임.
- 이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과정을 토대로 중학교뿐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진학하는 수혜자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서울예술영재 음악교육(서부권)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적정)등 사전절차 이행 결과, 재위탁 추진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됨.
- 문화본부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교육생의 경쟁력이 약화 된다며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00%에서 120%로 확대하였고, 매년 선발인원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 등록 인구 중 8세부터 16세 인원은 총 415만2천명 인데, 이 중 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동 사업의 지원 대상 규모를 파악하지 않은 채 연차별 인원 확대 계획만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게다가 현재 서울시교육청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소득제한 없이 다양한 분야의 예술 영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서는 서울시 인프라 활용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효과적인 영재교육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서울시 유사 사업 현황 >

구분	서울예술영재 교육지원 사업	서울시 교육청 영재교육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영재 선발
대상	·서울시 초·중·고	·서울시 초·중·고	·서울시 초3~고3
자격	·중위소득 (120%) 미만	·정원80%: 소득제한 없음 ·정원20%: 사회통합대상자	·소득제한 없음
비용 부담	·전액 시비 지원	·수업료 자비부담 (1년 60만원 한도) ※사회통합대상자 면제	·전액 국비 지원
분야	·음악, 미술	·수학, 과학, 미술, 발명, 음악, 체육, 융합 등	·음악, 무용, 전통예술, 융합

IV.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의: 동 사업은 청소년의 예술적 잠재력 발현과 자아실현으로 예술 영재를 양성하는 것임. 이에 학생들에게 단순히 음악 체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됨. 정량평가에 대회 수상실적과, 상급 학교 입학실적이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임.
- 답변: 상임위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0명, 참석위원 6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예술영재 음악교육(서부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100
----------	------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서울예술영재 음악교육(서부권) 사무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5조의2에 의거, 예술에 재능이 있으나 경제적 여건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발굴·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예술적 잠재력 발현과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 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을 위하여 경험 및 전문성과 인적·물적 인프라 등이 풍부한 민간에 교육을 위탁·운영 중임
- 다. 공모를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서울예술영재 음악교육(서부권)
 - 사업내용 : 음악에 재능이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발굴, 대학 등의 인적·물적 인프라와 전문성을 활용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
 - 교육대상 : 생활이 어려운 초·중등생 총 70명
 - 교육기간 : 약 9개월간

나. 주요 위탁 내용

- 위탁기간 : 3년(2025. 1. ~ 2027. 12.)
- 위탁유형 : 사무형 위탁
- 소요예산(안) : 410백만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위탁(공개모집)
- 위탁사무 범위
 - 교육생 모집 및 선발, 교육 과정 운영
 - 교육커리큘럼 기획 및 교수진 구성
 - 교육장소 및 협력시설, 교육 기자재 및 물품 확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14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위탁)

제14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교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5년도 예산편성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 작성자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심성영 (☎ 2133-2565)